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적 활동 법제화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1월 24일

청 원 인

성 명 : 김윤영 , 신겸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한일유엔아이APT 101-1806
(김윤영)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금화그린APT 101-602 (신겸)

전화번호 : 051.405.3978 (김윤영) / 061.245.5175 (신겸)
휴대전화 : 010.5259.3978 (김윤영) / 010.9161.5175(신겸)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한일유엔아이APT 101-1806(김윤영)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금화그린APT 101-602 (신겸)
	성명 : 김윤영 , 신겸
건명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자치적 활동 법제화
소개년월일	2013년 1월 24일

소개의견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학생자치상임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2013년 1월의 15회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생 자치적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입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15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은 학교의 장 이름아래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만을 언급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평적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같은 학생이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또래 상담, 또래 조정,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학생 자치적 활동의 보장을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또래 상담, 또래 조정, 학생 자치법정을 비롯한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학기별로 3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계는 학교, 청소년 인성 교육 센터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화 및 교육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 학생들에게 '기관'을 통한 가르침은 '가르침을 주고받는'역할이 분명한 수직적 구조로 인해서 저항감과 반발심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학생들이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자치적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 폭력의 해결과 예방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 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학생 본위의 학교 폭력 대응책은 큰 의의와 효과를 갖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교우의 조언과 중재를 통해 고민을 덜 수 있고, 또래 친구에게 의지하면서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래조정,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자발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준법정신을 강화하며 나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래조정,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은 또래집단에 대한 의식이 높은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을 비롯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장치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 주요골자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5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또래 조정, 학생 총회, 학생 자치법정을 비롯한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학기별로 3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또래 조정(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을 비롯한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상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청원인 성명 : 김윤영, 신겸

청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한일유엔아이APT 101-1806(김윤영)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금화그린APT 101-602 (신겸)

청원인 전화번호 : 010.5259.3978 (김윤영)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